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대학 강의 공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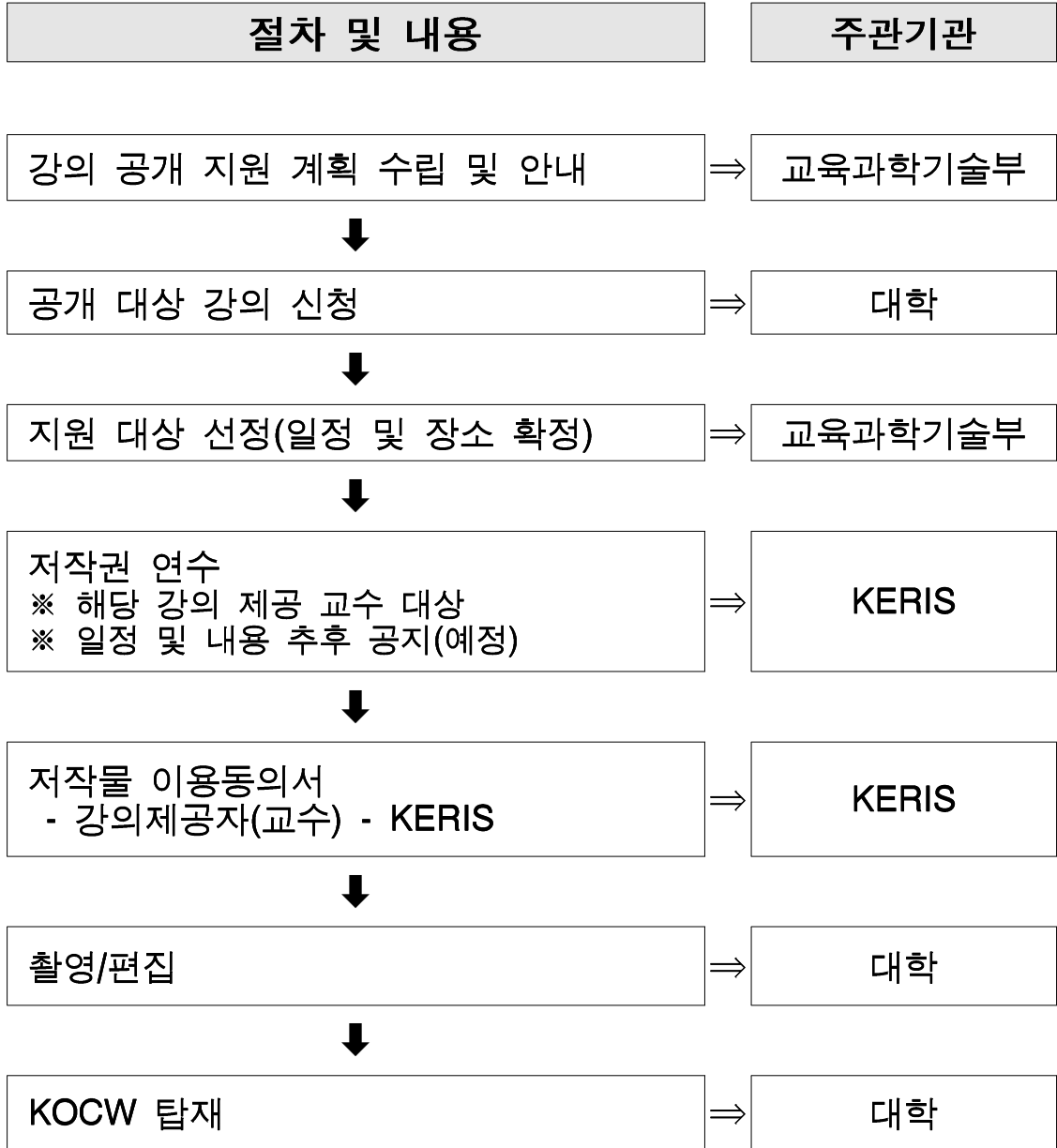
2009.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센터]

- 차 례 -

I. 강의 공개 절차	1
II. 강의 제공자(교수)	2
III. 대학(사업단)	3
IV. KOCW 안내	4
V. 메타데이터 작성 안내	7
VI. 첨부자료	8
붙임1) 촬영 시 협조 사항	8
붙임2) 저작권 기초	9
붙임3) 저작물 이용동의서(국문)	12
붙임4) 저작물 이용동의서(영문)	13
붙임5) 동영상 촬영 및 저작권 협약서(교수) ·	14

1 강의 공개 절차



□ 공개 대상 강의의 저작권자는 강의 제공자(교수)

- ※ 사업단 혹은 대학과 저작권 공동 소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 ※ 정규 과목 혹은 특강에 관계없이 저작권 소유자는 강의 제공자(교수)

□ 공개 대상 강의 촬영 시 협조 사항(붙임1 참조)

- 한학기 정규 과목일 경우, 학기 동안 동일 강의실 사용 권장
- 수업/특강 시작 30분 전 촬영 기사 미팅 및 환경 세팅 협조
- 수강자들에게 촬영 관련 협조 요청 등

□ 강의 동영상 촬영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초 습득(붙임2)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 저작권 기초 오리엔테이션 예정
- ※ 강의에 사용된 제3의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KERIS 제공 예정)
- 촬영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자 정의
- 제3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용(자유 이용) 범위 등
- ※ 참고자료 :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저작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길라잡이”(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촬영 및 저작물 이용 동의(붙임3, 4(영문))

- ※ 강의/특강 촬영 및 강의 저작권 관련 내용은 대학에서 강의제공자(교수)와 해결
- ※ 대학에서 붙임5 참조하여 협약서 개발
-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강의/특강 관련 자료(학습 자료, 강의노트 ppt 등)의 인터넷 서비스(KOCW)를 위하여 KERIS와 저작물 이용동의서 체결

3 대학 및 사업단

촬영된 강의/특강의 저작권은 강의제공자에게 있음
 ※ 공동 저작권을 위해서는 강의제공자(교수)와 별도 계약 체결 필요

촬영·편집 주관 기관
 - 개별 대학(사업단)

인터넷 서비스 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keris.or.kr>,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
 - 인터넷 서비스 : KOCW(<http://www.kocw.net>)

촬영 및 편집 포맷

구분	내용
제출 파일 포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v 포맷(인터넷 서비스용) - 파일 용량 : 400 MB 이하(파일 1개 기준) ※ 3학점 과목의 경우, 차시 별 다수의 파일 제출 가능 - 동영상 크기 : 640/480
기준 장비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2대, 촬영기사 2명, 촬영보조 1명 - 편집 인력 필요

※ 차시별/특강별 촬영 종료 후 1주일 내에 파일 및 관련 강의자료 (ppt, 강의노트 등) KOCW에 제출

KOCW란?

KOCW(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는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 공개 강의자료 공동활용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우수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서 활용까지 one-sto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배경 및 목적

-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대학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이러닝 공동활용체제 구축
 - ※ 공공예산이 투입된 고등교육 우수 콘텐츠를 국가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강화
-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개함으로써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확산 및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 대학 강의의 일반 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운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 ※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

□ KOCW 보유 콘텐츠

-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대학 사회의 지식 공유 문화 확산 및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WCU(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결과물(공개

강의, 연구논문, 학습자료 등)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0개 권역별 이러닝지원센터 개발 콘텐츠 제공

□ KOCW 제공 서비스

제공서비스		공개 강의(수)
1	국내 대학 우수 강의 공개 및 동영상 서비스	164종 ※40여개 대학 참여
2	WCU 우수 공개 강의 및 노벨 석학 특강 동영상 서비스	120종(2009.11)
3	해외 유명 대학 공개 강의 동영상 서비스	145종 ※MIT, UC Berkeley 등
4	해외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자료 연계 서비스	13만건 ※ARIADNE, MERLOT 등
5	위키 기반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서비스	2009. 12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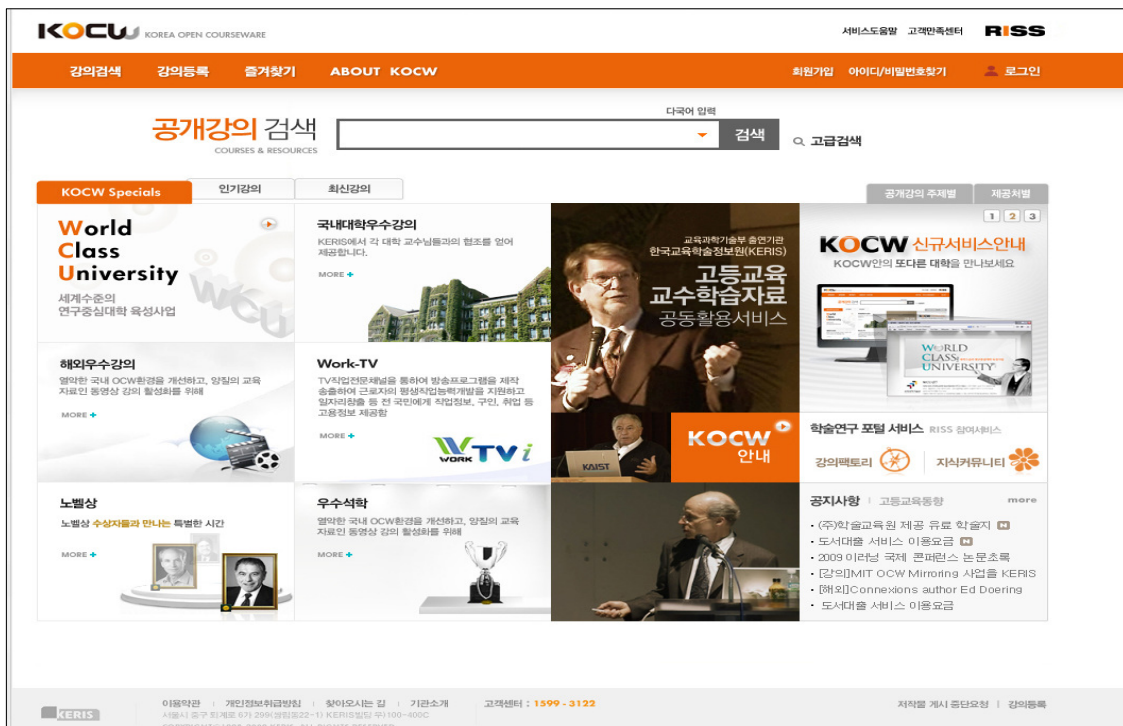
□ KOCW 사업 경과

- 2007. 5월~9월 : ▶ KOCW 시스템 구축 계획(ISP) 수립
- 2007. 12월 : ▶ KOCW 시범서비스 개통
- 2008. 9월 : ▶ 해외 자료 연계 검색 실시
▶ 국내 대학 공개 강의 수요조사 실시
- 2009. 3월 : ▶ 대학 우수 강의 동영상 서비스 실시
▶ WCU 노벨 석학 특강 동영상 서비스 실시
- 2009. 8월 : ▶ 해외 강의동영상 링크 서비스 시작
- 2009. 12월 : ▶ 이용자 참여형 KOCW 서비스 시작

☐ KOCW 메인 화면



[그림 KOCW 메인 화면 (2009년 현재)]



[그림 KOCW 개편 메인 화면(2009. 12 오픈)]

5

동영상 파일 탑재 및 메타데이터 작성 안내

- ※ 강의 파일 탑재 및 메타데이터 작성 안내(첨부파일) 참조
- ※ 메타데이터 양식(첨부파일) 참조

동영상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1.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강의자에게 귀속된다("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저작권(이하 "저작권") pp. 19-20참조)
2.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며 가장 보편적인 저작재산권 행사 유형
 -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다르니 유의
3. 대학 내에서 만들어진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 ("저작권" pp. 30-34 참조)

	저작권자와 권리	내용
1	대학이 저작자	대학이 이러닝콘텐츠 제작 기획, 대학내 해당 업무 종사자가 작성 및 대학명의 공표할 경우 ※교수에게 저작권법상의 권리 없음
2	교수=저작자, 대학에 저작재산권 양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임 교수자가 콘텐츠 개발, 대학에 저작권 양도 ※ 교수는 대학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콘텐츠 활용 가능, 그러나 저작인격권 행사 가능
3	교수=저작자 대학에 이용허락	대학은 교수의 이용허락 한도에서 활용 가능 ※ 교수자가 자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행사 가능
4	교수=저작자 대학차원의 이용 없음	대학과의 관계에서 문제 발생 소지 없음

4.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제작 및 수업 목적상 필요한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 그러나 KOCW 같이 OER 운동에 동참하여 강의자료를 무상으로 웹상에서 공개하는 경우, 수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콘텐츠에서 다른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5. 전송도 가능한가?

→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목적 활용 시 2007년 개정 저작권법 상에서 인터넷 상의 전송 허락

6. 자유이용의 한계는?

→ 수업 종료 후 수업과는 별도의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게시될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이므로 저작권에 위배

→ 오프라인 강의에서 활용된 제3자의 저작물 경우 수업 시간 내에서의 활용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에 삽입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7. 저작물의 인용(“저작권” pp. 45-48 참조)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공정한 관행에 준하는 인용 기준 : 저작권자의 허락 불필요

1.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
2. 정당한 범위
3. 인용부분과 본문이 명확히 구별될 것
4. 본문과 인용부분의 주종관계 명확
5. 인용의 필요성 존재
6. 필요최소한도의 인용
7. 출처 명기

8. 다른 온라인 콘텐츠로의 링크

→ 단순/직접 링크의 경우 본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처리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아님

9. 교육자료 공개에 있어서 저작권(“저작권” pp. 52-55 참조)

→ 문3)의 ③의 경우라면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자인 교수자가 해당 강의를 웹에서 무상 공개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개하려는 콘텐츠에 제3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수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문3)의 ②의 경우라면 대학에서 강의 제공자인 교수자와 계약 관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함

붙임2 : 저작물이용허락서

강의 동영상 이용 허락서

본인이 강의한 강의 동영상 및 제출한 강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강의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 구축을 허락함
2.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동영상 및 강의 관련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전송, 배포 및 복제를 허락함
3. 동영상 및 강의 관련 자료에 대한 이용 기간은 탑재 후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된다.
4. 강의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강의자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며,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의 효력은 상실함
5. 저작권자는 고등교육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KOCW)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강의 동영상 및 강의 관련 자료의 전송, 복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에 해당 강의 동영상을 연계서비스하는 행위를 허락함

강과명 : _____

개설 정보 : _____ 대학원 _____ 학과(전공)

교수자정보 : _____ 대학원 _____ 학과(전공)

연락처 : (Tel) _____ (Email) _____ @ _____

200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3 : 저작물이용허락서(영문)

License Agreement between Author and KERIS

This is a license agreement between _____ (“AUTHOR”) and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KERIS Building, 299, Toegyero, Jung-gu, Seoul, 100-400, Republic of Korea for the courses/lectures video-recorded (the “WORK”).

AUHOTR shall grant to KERIS a non-exclusive, worldwide license to publish, broadcast, transmit, and print online, in whole or in part, throughout the world.

AUTHOR shall agree that KERIS market the WORK, and make the work available to any users worldwide over 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 which KERIS operates to advance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y promoting effectiv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PTV in the near future.

AUTHOR shall agree that the WORK is created and utilized, and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3.0 Korea.

The license for the WORK is at least 5 years and shall extend continuously without any notice. The AUTHOR or KERIS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30 days written notice transmitted via electronic mail, or any mail with postage after such 5 years.

AUTHOR represent and warrant the following to KERIS: (i) AUTHOR is the sole owner of the WORK and has righ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ii) the WORK do not and will not violate or infringe upon any personal or proprietary right.

Course

Title: _____ Dept: _____ Inst: _____

Author

Name: _____ Dept: _____ Inst: _____

Date: _____

Sign _____

붙임4 : 우수 강의 동영상 촬영 및 서비스 협약서

우수 강의 동영상 촬영 및 서비스 협약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과 _____(이하 "강의자")는 우수 강의 동영상 촬영 및 동영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① 우수 강의 동영상 촬영 지원은 대학의 우수 고등교육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대국민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본 협약은 "KERIS"와 "강의자"가 해당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서비스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① "강의 동영상"이란 "강의자"가 교수를 목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하여 동영상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② "강좌"는 한개 이상의 강의 동영상 파일로 구성되어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하나의 학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강의 관련 자료"는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과 강의 내용 전달을 위한 보조 자료로써의 강의계획서, 멀티미디어(이미지, 음악 및 비디오 클립 등) 자료, 도서 및 학술/연구 논문의 일부, preprints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④ "강의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는 KOCW, RISS 및 RISS International 서비스 등 "KERIS"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강의 동영상이 서비스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는 IPTV 등이 포함된다.

⑥ "KOCW(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로 전국민 대상 대학 이러닝 강의 자료 무료 서비스이다.

⑦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http://www.riss4u.net>)"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연구 산출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국민 연구정보 통합정보서비스이다.

⑧ "RISS International"은 국가의 연구 산출물 통합정보서비스에 대한 해외기관 회원 대상 서비스이다.

- 제3조(의무)** ① “KERIS”는 우수 강의의 동영상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 및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인코딩 전반을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강의자”는 촬영 및 서비스를 위하여 “KERIS”가 지정하는 위탁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강의자”는 동영상으로 촬영된 강의의 학습효과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관련 자료를 “KERIS”에 제출하여 동영상과 함께 관련 자료로 서비스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③ “강의자”는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강의 및 제출한 강의 관련 자료가 고등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며, 특정 상업적 목적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④ “강의자”는 동영상으로 촬영된 강의에 활용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혹은 이용 허락을 확보한다. “KERIS”는 “강의자”가 활용한 자료에 대해 저작권이나 이용허락 미확보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강의자”는 동영상으로 촬영된 강의에 학습자의 모습이나 음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KERIS”에서 운영하는 KOCW, RISS 및 RISS International 등의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당 학습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동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되도록 한다.
- ⑥ “강의자”는 촬영된 동영상 및 제출한 강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KERIS”가 운영하는 KOCW, RISS 및 RISS International 등의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의한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CC-BY 2.0)

- ⑦ “KERIS”는 강의 동영상 활용에 대한 이용자 문의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며, “강의자”는 문의에 대한 처리 완료까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⑧ “KERIS”는 “강의자”가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이용 안내로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와야 한다.

제4조(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강의 동영상 및 관련 자료 탑재 후 10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제5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KERIS”는 KOCW, RISS 및 RISS International 등 강의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효과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선, 메뉴 변경, 자료 갱신 및 정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해당 강의 동영상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KERIS”와 “강의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 후 협약의 해지 또는 자료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전 합의 없이 행해진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2. 상대방이 협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3. 상대방이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② ①항의 사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① “KERIS”와 “강의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② “KERIS”와 “강의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협약의 일부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KERIS”와 “강의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협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KERIS”와 “강의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한다.

⑤ 향후 “KERIS”가 운영하는 KOCW, RISS 및 RISS International에서 수익 발생 시, “강의 동영상” 사용 대가는 “KERIS”와 “강의자”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⑥ 본 협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KERIS”와 “강의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부 칙

1. (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쌍방이 합의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추가 또는 일반사항)
 - ① “KERIS”와 “강의자”는 신의를 지키고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KERIS”와 “강의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주소, 소속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하여 “KERIS”와 “강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년 2 월 19 일

KERI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9(쌍림동 22-1)

원 장 박 덕 훈 (인)

강의자 :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Cell :

eMail :

(인)

동영상 촬영 시 협조 사항 (KERIS 촬영시)

1. 해당 학기 동안 되도록 동일 강의실 활용 권장
2. 첫 강의 시간에 촬영을 위한 환경 세팅 협조 필요
 - ※ 강의자에게 무선 마이크 제공
 - ※ 첫 강의 시작 30분 전에 촬영 기사와 사전 미팅
3. 개별 강의 시작 전에 촬영 기사 배석 및 카메라 설치
 - ※ 해당 강의 전후 강의에 사전 양해 필요
4.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석한 상황에서의 강의 촬영이므로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협조 요청
 - ※ 되도록 정시 수업 참석 및 강의 도중 자리 옮김 자제
5. 촬영 대상은 교수님(강의자) 및 블랙/화이트 보드(판서내용)
 - ※ 학생들은 촬영 대상 아님
6. 수업 시간 중의 질문의 경우, 음성 인식을 위하여 한 번 질문 내용을 반복한 후 답변 권장
7. 발표 수업의 경우, 서비스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8. 학교 혹은 교수님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사전(지방 출장 경우도 고려하여 최소 24시간 이전)에 KERIS 담당자에게 연락
 - ※ KERIS 담당자: 김성환(02-2118-1369, kocw@keris.or.kr)
9. 강의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 2주 후 KOCW를 통하여 서비스 예정이므로 주 단위 동영상 강의 메타데이터 및 강의 관련 자료(강의노트, 과제 등)는 강의가 끝남과 동시에 KERIS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에 업로드
 - ※ 웹하드 및 계정 정보(추후 별도 안내)
 - ※ 강의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 차시별 작성(국/영문, 제공양식 활용)
 - ※ 최초 강의자료 서비스 : 2009년 10월 초 예정